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 명칭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 개정
 -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⇒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- 현장책임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용어의 정의 개정
-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를 별표에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
 - 조례 내 통합지휘소로 명기된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였고
 - 현장책임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용어의 정의 개정과
 - 별표를 신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명시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2014. 12. 30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16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통합지휘소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‘재난현장 통합지휘소’의 명칭이 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’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통합지휘소’의 명칭을 ‘통합지원본부’로 개정
- 나. 재난현장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2조)
- 다.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와 임무 신설(안 별표1, 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8. 10. 25. ~ 11. 5. / 1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현장지휘관”을 “현장책임관”으로, “통합지휘소(이하 “통합지휘소”라 한다)”를 “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”

제2장의 제목 “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”을 “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책임관 지정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)”을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”를 “법 제3조제1호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제7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제5조 제목 “(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등포구대책본부장”을

“영등포구대책본부장”으로,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, 현장조치지원반,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”를 “통합지원본부 내에 실무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, 연락관, 상황총괄반, 현장대응반, 자원지원반, 대민지원반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,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.

제6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각각 한다.

제7조 제목 “(현장지휘관 지정)”을 “(현장책임관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현장지휘관”을 “현장책임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현장지휘관”을 “현장책임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실·국장”을 각각 “국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각각 하고 “법 제14조에 따른”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”를 “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영등포구대책본부장”을 “통합지원본부의 장”으로, “경우에는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40조”를 “경우에는 영등포구대책본부장에게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4조 제목 “(통합지휘소의 위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현장응급의료소장”을 “현장응급의료소의 현장응급의료소장”으로,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3조 제목 “(통합지휘소 철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철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통합지휘소”을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”를 “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5조제2항, 제3항”을 “제5조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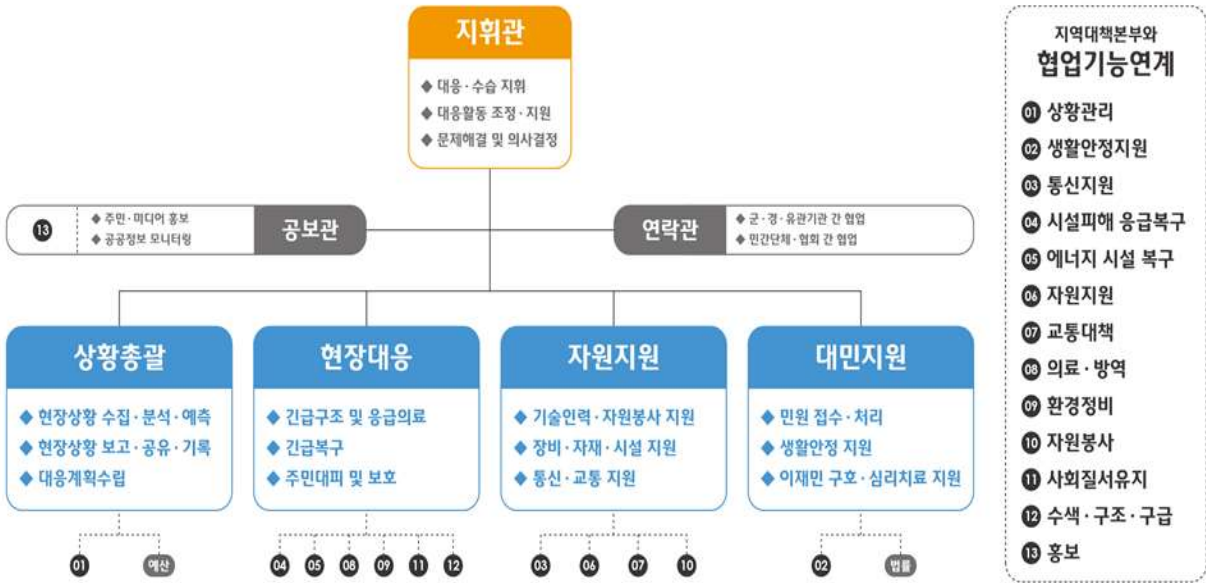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(제5조제4항 관련)

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



□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



[별표 2]

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(제5조제4항 관련)

구 분	주 요 임 무
통합지원본부장 (부 단 체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대응·수습 총괄 •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·물자·인력 등을 지원 •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·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
공 보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미디어 홍보 • 공공정보 모니터링 • 대응단체 정보공유
연 락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·경·유관기관간 협업 • 민간단체·협회간 협업
상 황 총 괄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지원본부 운영 • 현장 상황정보 수집·분석·예측 • 현장 상황정보 보고·공유·기록 •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•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·수습상황보고
현 장 대 응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 응급복구 • 에너지 복구 • 의료·방역(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) • 환경정비 •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·구조 지원
자 원 지 원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통신지원 • 현장대응 자원지원 • 교통대책 • 자원봉사지원
대 민 지 원 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• 생활안정지원 • 이재민구호·심리지원 • 장례지원 등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·지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재난현장 <u>통합지휘소</u>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<u>현장지휘관</u>”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<u>통합지휘소(이하 “통합지휘소”라 한다)</u>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“<u>초기대응담당자</u>”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<u>공무원을 말한다.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합지원본부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현장책임관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재난관리책임기관</u>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<u>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.</u>”</p>

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
현장지휘관 지정

제4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) ① 영
등포구대책본부장은 「재난 및 안전
관리 기본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
시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
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2조에 따
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
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
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
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
다.

②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제1항에
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
난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지휘소를
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〈신설〉

제5조(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) ①
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등포구
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
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
합지휘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

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
현장책임관 지정

제4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 ①

법 제3조제1호

통합지원본부

②

통합지원본부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
제7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이 재난현
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
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제5조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

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

통

합지원본부

통합지휘소의 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으로 한다.

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
1. ~ 7. (생략)

③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,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, 현장조치지원반,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업무연락관 파견)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

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 내에 실무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, 연락관, 상황총괄반, 현장대응반, 자원지원반, 대민지원반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,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업무연락관 파견) -----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
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장지휘관 지정)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: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·국장(실·국장이 없는 경우, 관련부서의 장)
2.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: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·수행하는 실·국장(실·국장이 없는 경우, 소관부서의 장)

제8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중앙사고수습본부, 서울특별시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,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7조(현장책임관 지정) ①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 현장책임관-----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-- 현장책임관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국·소장(국·소장)-----

2. -----
----- 국·소장(국·소장)-----

제8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-----

--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-----

-----통합지원본부-----
-----,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·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재난지역 주민대피) 영등포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40조 및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)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14조(통합지휘소의 위치)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제9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재난지역 주민대피) 통합지원본부의 장-----

경우에는 영등포구대책본부장에게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40조 --

-----.

제12조(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14조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 ① ---

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)

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 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영등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·지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응급의료활동지원) ①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
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--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제15조(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)

①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16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18조(응급의료활동지원) ①-----

----- 현장응급의료소의 현장응급의료소장-----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
여야 한다.

②、③ (생략)

제19조(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)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복구체계로의 전환) ① (생략)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영등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통합지휘소 철수)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,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.

제24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5조제2항,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
2. ~ 10. (생략)

-----.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22조(복구체계로의 전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23조(통합지원본부 철수) 통합지원본부----- 통합지원본부-----.

제24조(권한의 위임) -----
-----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3항 및 제4항-----
2. ~ 10. (현행과 같음)